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년월일	2004. 12. . (제 회)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각 결 호 (환경부장관)
제출년월일	2004. 12.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수립·시행으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공업단지·공사장·도로·임야 등에서 기름·중금속·토사 등이 빗물에 섞여 유출되는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가 전체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없이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湖沼)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시 허가조건의 폐지(현행 제10조의3 삭제)

폐수무방류시설 설치허가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자동경

보장치 및 유량계의 부착을 허가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동경보장치 및 유량계의 부착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수질오염경보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 (1) 호소에 조류(藻類)가 다량 발생하는 경우 독성물질을 생성하여 수돗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음.
- (2) 조류 발생시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조류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3) 조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제38조의3 삭제)

주요 호소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지정호소 또는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으며, 실제 지정된 곳도 없으므로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제도를 폐지함.

라.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39조 내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 (1) 공업단지·공사장·도로·임야에서 나오는 강우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음.

(2) 오염도가 높은 강우유출수를 다량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사장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오염이 심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함.

(3) 강우유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하천·호소의 수질을 개선하여 생태계의 보전 및 안전한 상수원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벌금 등의 과태료 전환(안 제57조·제58조 및 제60조)

낙시금지구역에서 낙시를 한 경우,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법무부·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와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4. 9. 21 ~ 10. 12) 결과, 특기
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1건

- 규제폐지 : 2건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水質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4·제5호의5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라 함은 빗물 또는 눈녹은 물에 도로, 공사장, 사업장, 임야, 농지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5의5. “불투수층(不透水層)”이라 함은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6의2.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것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②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수질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전의 제3항)중 “변경허가의 기준과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변경허가의 기준”으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運營機構의 代表者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변경허가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변경허가의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중 “이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資格基準·任命(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을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4항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廢棄物處理施設 등”을 각각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수질오염경보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호소수의 수질오염도가 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조류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질오염경보의 대상호소·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내지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39조 내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강우유출수의 관리

제3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강우유출수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거형태, 토지이용현황 및 산업현황
2. 수계별 수질현황 및 목표수질
3. 강우유출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
4.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강우유출수 관리방안
5.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우유출수 저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0조(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으로서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수자원의 개발,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산지의 개발, 체육시설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철강산업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까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에 따라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강우유출수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중 강우유출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지정목적·해제연월일·해제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2조(관리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강우유출수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관리대상 오염물질 발생량 및 불투수층 산정방법
4.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관리지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4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관할지역의 개발현황 및 불투수층의 면적
2.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강우유출수량 및 불투수층의 연차적 저감 계획
3. 지역개발계획 및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강우유출수량 및 불투수층 증가량의 연차적 저감계획
4. 그 밖에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의3(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폐수처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폐수처리시설·운반장비 및 실험시설을 항상 점검하여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할 것
3.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기준”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51조제2호중 “農藥”을 “농약·비료”로 한다.

제54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

제5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호의2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0

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제6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3.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의 신고에 관한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②環境犯罪의團束에 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수질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의3(허가조건)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누출 또는 유출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재산 및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점검, 사후감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14條(排出施設 등의 稼動開始申告) ①·② (생략)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

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한 者에 대
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徵收한
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 2. (생략)

② ~ ⑧ (생략)

第20條(許可의 取消 등) ①環境部長

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
可 또는 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
出施設의 閉鎖를 명하거나 또는 6
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操業停止
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0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허
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위반
하거나 제10조의3의 規定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 5. (생략)

第23條(환경기술인) ①事業者는 排

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
영・管理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申

1.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第20條(許可의 取消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
-----변경허가의 기준-----

3. ~ 5. (현행과 같음)

第23條(환경기술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任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및 環境管理人的 資格基準·任命 (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2條(公共施設의 設置·관리 등)

①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종말처리시설 또는 廢棄物處理施設 등에서 排出되는 물의 水質基準(이하 “放流水水質基準”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종말처리시설 또는 廢棄物處理施設 등에서 排出되는 물의 水質이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그 施設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바에 따라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자격기준-----

第32條(公共施設의 設置·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排水종말처리시설-----

③ (현행과 같음)

④-----排水종말처리시설-----

제33조의2(수질오염경보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호소수의 수질오염도가 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조류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질오염경보의 대상호소·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第34條(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

域) ①環境部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결과 水質保全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湖沼를 指定湖沼로 지정·告示하고, 指定湖沼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地域을 湖沼水質保全區域으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을 지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關係市·道知事 및 水面管理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을 변경하거나 解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市·道知事 또는 水面管理者가 環境部長官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미리 住民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第35條(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 ①市

·道知事は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

<삭 제>

이 지정·告示된 때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對策을 기초로 하여 5年마다 水面管理者와의 協議를 거쳐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湖沼水質保全區域이 2 이상의 市·道の 行政區域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區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は 상호 協議하여 공동으로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한 水質管理基本對策
2. 下水道 등의 整備 기타 指定湖沼水質保全事業에 관한 사항
3. 指定湖沼의 浚渫·藻類除去 및 水面清掃 등에 관한 사항

④國家는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第36條(調整의 申請 등) ①관계 市·

<삭 제>

道知事は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環境部長官에게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이 있는 때에는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調整의 申請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第37條(管理對象施設의 운영) ①指

<삭 제>

定湖沼의 水質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湖沼水質保全區域안의 施設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이하 “管理對象施設”이라 한다)을 運營하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기준에 따라 당해 施設을 運營하여야 한다.

1.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營위하기 위한 施設

2. 觀光振興法 第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客利用施設業을 營위하기 위한 施設

3. 기타 指定湖沼의 水質汚染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施設로서 大

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②管理對象施設別 관리기준은 施設의 종류 및 규모와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第38條(특정 農産物의 耕作勸告 등)

<삭 제>

①市·道知事は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湖沼水質保全區域안에서 農作物을 耕作하는 者에 대하여 耕作對象農作物의 종류 및 耕作方法과 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에 따라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休耕함으로써 인하여 耕作자가 입은 損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償할 수 있다.

第38條의2(湖沼안의 쓰레기 收去·처리) ①·② (생략)

第38條의2(湖沼안의 쓰레기 收去·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第36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約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調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관계 市·道知事”는 “水面管理者 및 市長·郡守·區廳長”으로, “協議”는 “協約”으로 본

③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

다.

<신 설>

第38條의3(改善命令 등) ①環境部長

官은 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湖沼의 水質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水面管理者 또는 湖沼를 水源으로 하는 取水施設 또는 淨水施設의 管理者로 하여금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所要事業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は 湖沼水質保全區域안에서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管理對象施設을 운영한 者에 대하여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管理對象施設 또는 汚染物質處理方法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は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管理對象施設의 運營者가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사용중지 등

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필요
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의2 강우유출수의 관리

제3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도

지사는 강우유출수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거형태, 토지이용현황
및 산업현황
2. 수계별 수질현황 및 목표수질
3. 강우유출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
4.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강우유출
수 관리방안
5.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우유출수 저감을 위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0조(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수자원의 개발,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산지의 개발,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철강산업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

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
까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
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일
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
획에 따라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
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
한다)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
우

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
設)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
리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우유
출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기준을 지키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신 설>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환경

부장관은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강우유출수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중 강우유출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지정목적·해제연월일·해제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2조(관리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강우유출수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관리대상 오염물질 발생량 및 불투수층 산정방법
4. 강우유출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관리지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의 수립

<신 설>

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불투수층의 면적
2. 관리지역에서 배출되는 강우유출수량 및 불투수층의 연차적 저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 및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강우유출수량 및 불투수층 증가량의 연차적 저감계획
4. 그 밖에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

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3(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第43條(廢水處理業의 登錄) ① (생第43條(廢水處理業의 登錄) ① (현

략)

③廢水處理業者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第49條(보고 및 檢査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當該 施設 또는 事業場 등에 出入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하거나 關係書類·施設·裝備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행과 같음)

③폐수처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폐수처리시설·운반장비 및 실험시설을 항상 점검하여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할 것
3.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第49條(보고 및 檢査 등) ①-----

-----제3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
리·운영기준-----
-----.

<p>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 8. (생 략)</p> <p>9. <u>第38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對象施設의 사용중지 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u></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第5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2. (생 략)</p> <p>2의2. <u>제1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p> <p>3. ~ 10의2. (생 략)</p> <p>10의3. <u>第38條의4의 規定에 의한 წყш금지구역안에서 წყш행위를 한 者</u></p> <p>12. · 13. (생 략)</p>	<p>第57條(罰則) -----</p> <p>-----.</p> <p>2. (현행과 같음)</p> <p>2의2. <u>제14조제4항</u>-----</p> <p>3. ~ 10의2. (현행과 같음)</p> <p>10의3. <u>제40조제1항의 規定에 의 한 申報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强우유출 水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한 자</u></p> <p>12. · 13. (현행과 같음)</p>
<p>第5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u>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准 水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u></p> <p>2. (생 략)</p> <p>4. <u>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하</u></p>	<p>第58條(罰則) -----</p> <p>-----.</p> <p><삭 제></p> <p>2. (현행과 같음)</p> <p>4. <u>제40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시 설의 설치 또는 개선 명령을 위</u></p>

<p>거나 任命(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p> <p>4의2.·5. (생 략)</p>	<p>반한 자</p> <p>4의2.·5. (현행과 같음)</p>
<p>第60條(過怠料) ①제46조의2의 規定을 위반하여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第60條(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11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2. 제23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제46조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p>
<p>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1.·2.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p>	<p>②-----</p> <p>300만원-----.</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38조의4의 規定에 의한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p> <p>4. 제4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③-----</p>

<p><u>50萬원</u>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1. ~ 9. (생략)</p> <p>④ ~ ⑦ (생략)</p>	<p><u>100만원</u>-----.</p> <p>1. ~ 9.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	---

<의안 소관 부서명>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연 락 처	(02) 2110-6822